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4
----------	-----

발의연월일 : 2012. 9. 17.

발의자 : 장문혁 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야간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통학생들에게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 지원신청(안 제4조)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읍·면장에게 신청
- 지원방법(안 제5조)
 - 택시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학택시에 지급
 -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함.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1)
- 입법예고 : 2012. 8. 20 ~ 9. 8(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집행기관 의견수렴 : 제출된 의견없음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를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7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원방법(안 제5조)
 - 택시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학택시에 지급
 -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함.
- 수요조사 결과(평창교육지원청)
 - 대 상 : 14개 노선, 36명
 - 소요액 : 연평균 30,380,000원
 - 일 평균 151,900원 × 20일 = 3,038,000원
 - 월 평균 3,038,000원 × 10개월 = 30,38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 소요예산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경우

3. 미첨부 사유

- 통학택시비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 약 3천만원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가능

작성자	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원 외 2인
연락처	(033) 330- 2189

관 련 법 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 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